

NEWS LETTER

2024-07-16

Legal Issue

- 슈파(Schufa) 사건으로 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 유명인의 목소리, 음색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 제재처분에 따른
채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 대형 그룹 기업의 그룹 데이터 및
통합 인프라 운영 규정 검토 법률자문



Legal Issue

슈파(Schufa) 사건으로 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김경환 대표변호사

전통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보처리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AI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점수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심사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예다.

이 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결정이 유리한 결정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사용된 자신의 개인정보나 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할 것이고 나아가 그 결정을 거부하면서 인적 개입을 통한 재결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생긴 권리가 바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다. 이 권리는 유럽 GDPR 제22조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최근 GDPR 제22조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단이 있어,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슈파(Schufa)라는 민간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 소비자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이 평가 및 관리되는데, 슈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매년 1억6500만명의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한 다음, 이를 은행 등의 계약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슈파는 평가요소마다 가중치가 얼마나 부여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슈파가 제공한 신용도 점수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된 OQ란 사람이 슈파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정보의 부정확성을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슈파는 영업비밀이라면서 신용도 평가에 어떻게 가중치를 매기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OQ는 관할 감독기관을 거쳐서 비스바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비스바덴 행정법원은 2021. 10. 1. GDPR 제6조 제1항 및 제22조의 해석과 관련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판결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ECJ에 회부했다.

ECJ는 2023. 12. 7. GDPR 제22조의 자동화된 결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온라인 신용 신청이나 직원 채용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바, 신용정보 기관이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향후 지급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기반한 확률 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해당 확률 값을 전송 받은 은행 등이 해당 확률 값을 강력하게 활용해 그 사람과의 계약 관계를 설정, 이행 또는 종료하는 경우이므로, 따라서 슈파의 신용도 평가는 GDPR 제22조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C-634/21).

이 ECJ 판결의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정보주체는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AI를 운영하는 회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에 대해 더 많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AI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기업은,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윤리적·인권적 고려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AI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유명인의 목소리, 음색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양진영 대표변호사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판례는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참조).

참고로 미국에서는 Midler v. Ford Motor Co. 사건에서 음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Ford사는 1970년대에 유행하였던 노래를 모아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노래를 부른 가수가반대를 하여 그럴 수 없었고, 결국 비슷한 음색을 가진 가수를 찾아 해당 노래를 녹음하고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널리 알려진 유명 가수의 특색 있는 목소리를 상품 광고를 위하여 허락 없이 흉내 내어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보았다.

한편,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수 추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민법상 보호를 받을 때 보다 보호가 강화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렇다면, 유명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음색이나 목소리를 재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사망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판례만 존재하는데, 상속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 제기 약 39년 전에 사망한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 판결 참조), 상속성을 인정하되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사후 50년 동안만 존속한다고 한 판례도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가능성에 관하여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고,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의 판단을 받은바가 없다. 또한 2006년의 판례는 상당히 오래전 판례로서, 최근의 법원의 견해를 보여주는 판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기존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판시와 동일한 판시를 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음색,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도용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부정경쟁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인정되므로, 목소리, 음색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제재처분에 따른 채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 제재처분에 따른 채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제재처분에 따른 채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이며,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는 신사업의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신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재부가금을 미납하면서,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의 채권이 존재함과 원고의 제재처분의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형 그룹 기업의 그룹 데이터 및 통합 인프라 운영 규정 검토 법률자문

대형 그룹 기업의 그룹 데이터 및 통합 인프라 운영 규정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그룹 기업의 그룹 데이터 및 통합 인프라 운영 규정의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의 데이터 통합에 따른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정립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인에 그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및 인프라 운영과 관련한 규정 전반의 정합성과 체계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 유관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 2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